

[별표 1]

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(제14조제1항관련)

위 반 행 위	해당법조문	행정처분기준
1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	법 제13조제1항 제1호	등록말소
2.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가.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 나. 가목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	법 제13조제1항 제2호	영업정지 6월 등록말소
3.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시공상의 하자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가.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시공상의 하자로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되거나 이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가 발생한 때 나.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다.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친 때 라.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때	법 제13조제1항 제3호	등록말소 영업정지 9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3월
4. 법 제11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1에 해당할 때. 다만, 법인의 임원중 법 제11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가. 개인인 등록사업자가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나. 법인인 등록사업자의 임원이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개임하지 아니한 때 다. 법인인 등록사업자의 임원이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부터 6월이 경과되는 때까지 개임하지 아니한 때	법 제13조제1항 제4호	등록말소 등록말소 영업정지 3월

5. 법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때	법 제13조제1항 제5호	등록말소
6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	법 제13조제1항 제6호	영업정지 2월
가. 건설 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 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		영업정지 1월
나.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 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·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		영업정지 3월
다.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 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		영업정지 1월
라.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		
7.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	법 제13조제1항 제7호	영업정지1년
가.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 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를 진행한 때		기처분한 영 업정지기간의 2배. 다만, 그 영업정지기간 은 1년을 넘 지 못한다.
나.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영위한 때		
다.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(변경승인을 포함한다)을 얻지 아니하고 사 업을 시행한 때		등록말소
(1)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 을 시행한 때		영업정지 9월
(2)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		영업정지 1년
라.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 반하여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공동 주택의 방수·위생 및 냉·난방설비공사를 시 공한 때 또는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다른 사람에게 시공하게 한 때		

마.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때 바. 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한 때 (1) 내력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안전진단결과 붕괴우려가 있을 때 (2)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 (3) 그 밖의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 사.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당해 공사를 계속한 때. 아. 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·공급한 때 (1) 입주자모집승인 또는 입주자모집공고 등 공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급한 때 (2) 입주자모집승인시 당해 주택의 준공 또는 저당권말소의 이행을 연대보증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(3) 입주자모집승인시 승인된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공급한 때 (4) 입주자선정방법·순서를 위반하여 공급한 때 자.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때 차.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카.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(입주자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를 한 때를 제외한다)	영업정지 6월 등록말소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등록말소 영업정지 9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6월
---	--

(1)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한 날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때	영업정지 3월
(2)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지체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	등록말소
타.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(하자보수보증금의 일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잔액을 말한다)을 초과하는 하자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2회 이상의 하자보수명령 또는 손실보상명령에 불응하거나 그 이행을 지체한 때	영업정지 1년
파.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채발행 등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때	
(1) 사채의 납입금을 제102조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	영업정지 6월
(2) 사채의 납입금을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 관리기관외의 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 때	영업정지 3월
하.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등의 규정에 위반한 때	
(1)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·기피 또는 방해한 때	영업정지 6월
(2)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위반한 때	영업정지 2월
거.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중지 그 밖의 명령을 위반한 때	영업정지 6월
8. 처분의 통산 조치 등	
가.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3년간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8월을 초과한 때	등록말소
나. 제1호 내지 제8호가목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	영업정지 1월